#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2019-3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

나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입법예고(2019.1.2.~2019.1.22.) 결과 : 의견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동법시행령」 제14조에 의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강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강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서구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최소 4인 이상으로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제2항”을 “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관계 공무원에게”로, “수시 지도·점검할”을 “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---------- 서울특별시 강서구----------. |
| 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<br>1.·2. (생 략)<br>3. 서울특별시강서구(이하 "강서구"라 한다)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<br>4. ~ 6. (생 략)<br>② (생 략) | 제3조(기능) ① ----------.<br>1.·2. (현행과 같음)<br>3. 서울특별시 강서구----------<br>4. ~ 6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조직) ①·② (생 략)<br>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 | 제5조(조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----- 4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정사를 두어야 한다. 단, 직영센터의 경우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 | ----------. ---------- 2명 ----------. |
| 제9조(운영) ①·② (생 략) | 제9조(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. |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|
|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| 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 |
| 제10조(주민참여)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 | 제10조(주민참여) ① ---------- 마련----------.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1조(지도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 | 제11조(지도감독) ---------- 관계 공무원에게 ---------- 수시로 지도·점검하게 할 --. |

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| 평 가 번 호 | 2019-1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치법규명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| | | | |
| 평가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| 직 급 | 행정7급 | 성 명 | 김현봉 |
| 입안주무부서 | 여성가족과 | 통보(조치)일 | 2019. 1. 4. | | |
| 관련조문 |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| |
| 개정안 전부 | | 원안 동의 | - | | |

#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## □ 자치법규명

○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□ 개정사유

○ 상위법령인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
## □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수탁 대상자 범위를 적합하도록 개정

○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조문 정비

## □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반영하고,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 범위를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

○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#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번호 | 2019A서울강서001 | | | |
| 정 책 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| | | |
| 소관부서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 |
| | 부서명 | 여성가족과 | | |
| | 담당자명 | 최은영 | 전화번호 | 02-2600-6768 |
| 담당부서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 |
| | 부서명 | 여성가족과 | | |
| | 담당자명 | 김화옥 | 전화번호 | 02-2600-6762 |
|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| 2019년 01월 07일 | | | |
| 완료(제외) 통보일자 | 2019년 01월 07일 | | | |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01월 22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.

## 4. 작성자

○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(담당자 : 행정7급 최은영 2600-6768)